

북한의 임업 ⑥

서 승 진 / 산림청
과 장

〈전호에서 계속〉

林産物 生産 및 利用

북한은 그간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아울러 임산물의 종합적 이용, 목재의 절약, 목삭판 및 목섬유판 제조 등 임산공업의 발전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북한의 임산물생산과 임산공업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제도 및 정책,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산물의 생산 및 수급 등을 다룸에 있어서는 산림부산물(수실류, 버섯류, 산채류 등)도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목재만을 다루었다.

가. 木材의 生産

1) 伐採 制度

북한의 초기 伐採관련 제도는 1946년 6월 4일 제정된 「임야관리령」에서 규정되는데, 이 령에서 立木의 伐採 및 반출, 생산원목의 검사와 인도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목재 생산규격에 관한 규정」

(1948. 10. 9), 「국유임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1949. 12. 30), 「임목처분 사업에서의 지방소비재 취급에 관하여」(1950. 2. 21 「목재생산규격」(1950. 4. 29), 「임산물 매각대금 징수에 대하여」(1950. 4. 29) 등을 제정 시행한다. 이 당시의 伐採관련제도 등은 일제시대의 제도를 기본 틀로 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근간에 이르러서는 1977년에 제정된 「토지법」에서 伐採와 관련하여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어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 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伐採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1992년 새로 채택된 「산림법」에서는 伐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과거에 「토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제31조) 순환은 채벌은 목재자원을 늘리고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

한 합리적 방도이다. 해당기관은 산림자원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 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 목재생산을 끊임 없이 늘여야 한다.

(제32조) 나무베기허가는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은 국가로부터 나무베기 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 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땃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허가는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제33조)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는 벨 수 없다. 나무베기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벤 나무는 해당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통나무는 나무반출증이 없이도 실어 갈 수 있다.

북한은 伐採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순환식 채벌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법은 1954년 5월 6일 김일성이 「전국임업부문 열성자회의」에서 지시한 후 그해 10월 노동당 제 4차 12차 회의에서 경영방침으로 확정하여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4~65년 기간에 산림자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비교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순환식 채벌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1966년 부터는 전국적으

로 시행토록 하였다.

「순환식 채벌방법」은 임산사업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몇개의 순환작업구역(輪伐區)을 설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원목을 생산토록 하므로써 산림의 保續的 이용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산림자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立木의 성장상황에 따라 순환채벌의 주기를 결정한다. 순환주기는 15, 20, 25년 및 30년으로 하고 있으나 대개는 30년 주기로 한다.
- ② 임산사업소가 주체가 되어 伐採순서와 年間伐採량을 결정한다.
- ③ 새로운 조림계획이나 육림 및 산림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④ 적절한 공정설계를 한다.
- ⑤ 투자계획 등 「순환식채벌법」의 계획설계는 道산림설계소에서 수행한다.

북한은 「순환식 채벌법」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에 산림자원의 분포, 순환채벌 작업에 대한 총체적 계획, 설명서 및 관련 도표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임산사업소와 공업림경영소의 동의를 거쳐 道 임업총국(또는 임업관리국)의 심사후 임업부에 보고된다. 임업부는 이를 심사한 다음에 정무원에 보고하게 되며, 정무원의 허가를 得하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여타 부문에 우선하여 시행된다.

북한은 「순환식 채벌방법」이 실시됨에 따라 ①分散되어 있던 산림개발 시설과 자재 및 인력이 집중되었고, ② 임업부문 노동자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③ 임업노동자의 생활향상과 혁명사상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그 성과를 宣傳하고 있다.

북한이 이 방법을 작용함에 따라 종전의 무분별한 伐採를 벗어나 어느 정도 과학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산림관리에 적용해온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인 바, 북한이 새삼스럽게 그들의 독창적인 새로운 산림관리 방법인양 선전하고 있으나, 목재의 부족으로 원목 생산량의 증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의문시 된다.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순환식채벌방법」의 악용과 아울러 伐採地 檢査, 搬出證 제도의 施行 등 나름대로 엄격한 伐採管理制度를 운영하고 있어 伐採上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84년 철원군 신탄사업소에서 일하다 귀순한 별목공에 의하면, 별채기관들마다 原木生産量 목표달성에 급급하고 별채기관들의 伐木工들 사이에서는 생활비 充當을 위해 허가량을 초과한 도벌·남벌 및 원목의 불법 유출, 매각이 盛行되고 있다고 한다.

2) 木材生産 機關

북한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기관으로는 임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 신탄사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자동차사업소 등으로 다양하다. 산업건설용 목재는 임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1976년경 국제 유품과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시·군 인민위원회 산하 상업과에 설치된 신탄사업소에서는 주로 지역내의 탁아소, 유치원, 인민병원, 기관 등에 火木을 공급하기 위한 伐採를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소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그리고 자동차사업소에서는 목탄차량 연료용 火木을

확보하기 위하여 伐採를 하고 있다.

위에서 言及한 여러 기관 중 원목 및 목재생산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임산사업소이다. 임산사업소는 1947년 5월 29일 施行된 「농림국 임산부 신설에 관한 결정서」에 依據하여 원목, 제재, 薪木, 목탄 및 임산물 가공품의 생산을 임무로 하여 설치된 내각 산림국 직속기관으로서, 당시에 혜산, 길주, 무산 등에 19개소가 設置되었다.

그 후 1970년대에는 정무원 직속 임업총국 산하의 국가기업소 형태로 轉換되어 별목과 목재 생산을 擔當하였으며, 이 당시 11개소가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산사업소의 하부조직으로 임산작업소가 있고 그 밑에는 작업장 단위로 임산작업단이 運營되었다.

현재는 임업부 傘下機關으로서 道 임업총국(또는 임업관리국)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갱목생산사업소와 함께 약 8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중국 자료에 의하면 자강도 백암군 소재 「연암임산사업소」의 경우 노동자가 1,600명, 관리간부가 80명이며,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약 6만ha, 年間 별채면적은 900ha, 목재생산량은 14만m³이라고 한다.

한편 FAO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산간지대 郡에 3~10개의 林村을 설치하여 1개 林村에 70~200가구를 거주토록 하고 학교 탁아소, 가게 등을 설치해 주면서 별채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1개 林村에서는 年間 300ha(별채량 1,500m³)이내의 별채를 실시함과 아울러 조림, 임도시설 및 보수, 산림보호 등도 실시한다.

3) 實行體制 및 關聯 技術

북한은 제도적으로 年中 벌채가 가능하나 冬節期(11월~익년 3월)에 年中 생산목 표량의 70~75%를 벌채하고 있다. 벌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기업소에서는 소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답사하여 벌채지역을 선정하고 벌채신청서를 공업림 경영소를 경유 道임업총국(또는 임업관리국)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통상 15일 소요) 벌채를 하고 있다.

벌채가 허가된 경우 산림보호요원이 벌채 대상목을 선정하는데, 건축자재용은 30년 이상된 나무를, 火木用은 직경 4cm 이상의 참나무, 박달나무, 기타 잡목을 벌채토록 하고 있으며, 직경 4cm 이하의 모든 나무에 대한 벌채를 금지하고 있다. 벌채목은 박피한 후 직경 2.5cm 크기의 극인을 지상 5cm와 160cm 두곳에 타기한다. 벌채된 원목과 화목은 트랙터, 우마차, 뗏목 등을 이용하여 입산사업소 야적장으로 수송·보관되며, 산림경영소가 발급한 搬出證에 의하여 반출된다. 이때 수령기관 및 기업소에서는 정해진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은 「순환식벌채방법」의 전국적 시행과 아울러 1970년대初부터는 원목생산을 중대할 목적으로 伐木, 集材, 運材 作業의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현재 원목생산작업의 기계화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FAO 자료상의 사례를 보면 삼지연에 있는 林材의 1개 작업반(총구성인원 14명)의 경우 2명 1조로 기계톱(2.5마력)을 사용하여 벌목을 하고 약 200m거리의 集材 作業에는 crawler 트랙터(75마력)를 사용하여 시간당 6본(제적 5m)을 集材하며, 6ton트럭을 이용하여 운在를 한다고 한다. 급경사 벌채지에서는 다양한 케이블 형태의 크레

인도 집재작업에 사용한다. 이 벌채지에서는 ha 당 241본(211m³)을 벌채하면서, 14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日日 평균 약 60m³을 產出(伐木, 集材, 上車 作業 포함)하였다.

또한 이 林材에는 경미한 수리시설이 있고, 郡 所在地에는 보다 큰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各道에는 기계수리 작업단을 포함한 임업노동자 훈련소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에서 목재의 운반을 위한 임도나 산림철도는 임업부에 의해 건설,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도 강물이 이용한 뗏목 운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벌채지로부터 산림철도, 임도 등을 통하여 두만강, 압록강변 등의 저목장으로 옮겨다가, 4~7월 중에 뗏목을 이용하여 하류지역으로 運搬한다. 원목의 뗏목 운반은 「流伐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다.

4) 木材의 生産 및 消費

북한은 原木生産量의 擴大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나, 1960년부터는 구체적인 생산목표량이나 실적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간 북한이 발표한 원목생산 계획 및 실적은 <표 1>과 같다. 1947년의 원목생산계획은 551천m³이었으나, 1949년에는 2,849천m³(원목 1,899천m³, 薪木 950천m³)으로 크게 증대되었고, 1961년에는 원목생산목표량만도 2,900천m³으로 擴大되었다.

한편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원목생산량이 300~400만m³에 이르렀고 1970년대 초에는 560만m³에 달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이 당시 양강도, 자강도 및 함경북도에서 원목 총생산량의 88%를, 특히 자강도에서 원목 총생산량의 40%를 생

산·공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1950년대 중반부터 戰後 復舊事業의 추진과 특히 석탄생산의 확대에 따라

목재의 부족이 점차 심화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표 1〉 북한이 발표한 原木生産 計劃 및 實績

년 도	생산계획 또는 실적	비 고
1947년	원목 551천m ³ (계획)	2개년계획 (1949~50)
1949년	원목 1,899천m ³ (계획)	
1950년	신목 950천m ³ (계획)	
1956년	원목 1,840천m ³ (계획)	3개년계획 (1954~56)
1956년	신목 950천m ³ (계획)	
1956년	원목 2,200천m ³ (실적)	1차 5개년계획 (1957~61)
1961년	원목 2,900천m ³ (계획)	

북한은 제 1차 5개년계획 (1957~61)에서 「석탄생산에서 목재소비를 엄격히 절약하여 갠도 및 채탄장에서 갠목에 대한 수요를 세멘트 등으로 가능한한 충족시킬 것」, 「목재의 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백방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促求하였다.

이어서 제 1차 7개년 계획 (1961~1967)에서도 「석탄생산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긴장되는 갠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갠목의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促求한 바 있다.

여기서 북한이 그간의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석탄생산 목표량을 보면 〈표 2〉와 같은 바, 북한이 195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석탄생산의 대폭적인 증대를 도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석탄생산 실적은 단계별 목표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갠목수요 또한 증가되어 온 것은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중국 자료에 의하면 年間 650~700만m³의 원목(연료재 및 농용자재는 제외)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 북한의 石炭生産 目標量

(단위 : 만톤)

년 도	목표량	년 도	목표량
1947	280	1967	2,500
1950	550	1976	5,000~5,300
1956	400	1984	7,000~8,000
1961	1,000	1993	12,000

주 : 통일원에서는 북한의 석탄생산 능력을 1975년 2,700만톤, 1985년 3,750만톤, 1989년 4,33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위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원목 생산량은 근간의 통일원 추정치 300만m³이나 FAO의 1990년 현재 추정치 4,692천m³(산업용재 600천m³, 연료재 4,092천m³)과 큰 차이가 있다.

통일원의 推定根據는 알 수 없으나, 1960년을 전후하여 이미 북한의 산업용 원목생산량은 거의 300만m³에 달했고, 그간의 석탄생산 擴大에 따른 갠목수요의 필연적 증가, 경제계획시 마다 강조해온 원목생산의 증대 등을 감안컨대, 근간의 원목생산량을 300만m³으로 보는 것은 과소 추정되었다고

본다.

FAO자료 또한 북한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1964년 이후 현재까지 연료제의 일부 증감이외에는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현재年間 약 650만^m의 산업용재와 최소한 100만^m의 연료제 및 농용·자재용 원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목재생산 및 소비실태를 추정해 보면, 북한의 연간 총목재소비량은 약 900만^m으로서 이는 국내 원목생산량 약 750만^m과 시베리아 벌목인부 진출에 의해 반입되는 약 100만^m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추정결과로 보면 북한은 목재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資源配分上의 문제, 즉 목재를 갱목, 건설용재 등의 생산재적 수요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所要되는 소비재적용도의 목재(가옥 수리용 목재, 가구재, 펄프재, 棺材 등)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林産工業

1) 關聯制度 및 特徵

일반적으로 북한의 공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계획작성,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생산지도, 재정관리, 후방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소유형태별로 보면 국영공장·기업소와 협동단체 공장·기업소로, 관할에

따라서는 중앙공장·기업소와 지방공장·기업소로 나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단일기업소,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로 구분된다.

공장·기업소의 생산조직 및 관리는 생산·기술적 특성과 생산의 전문화, 그리고 협동화 수준에 따라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별, 생산품목별로 직장이 조직되며, 각 직장은 여러개의 직업반으로, 작업반은 다시 分組들로 나뉘어 진다. 특히 3級이상의 중요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는 중앙당 및 정부원의 경제관련 부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각 道·市·郡 黨委員會와 각 道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전산업을 국유화 하면서 임산공업시설 또한 국유화한 다음에 의해서 언급한 관리원칙을 적용하여 임업부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소유형태나 관할 규모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임산공업시설을 생산품목별로 구분하면 제재, 합판, 목삭판 및 목섬유판 제조시설이 있으며, 목재관련 공업시설로는 가구공업, 펄프 및 제지공업시설이 있다.

북한 원목생산지역 및 목재가공시설 분포를 보면, 목재가공시설은 주요 산림기지가인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지역에 주로 분포되고 있으며, 목재가공업 중심지로는 평양, 혜산, 길주, 무산, 만포, 함흥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의 임산공업 정책을 살펴보면 초기부터 만성적인 목재부족에 따라 제재수율의 제고, 폐잔재 등을 이용한 목삭판, 목섬유판의 생산확대 등 목재의 종합적, 효

을적 이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50년대의 전후복구 기관에 구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부 원 조와 그 후 자체 제작한 조잡한 설비에 의 해 건설된 목재가공시설들이 노후되고 기 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새로운 설비 로의 교체나 현대식 가공시설의 증설이 이 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생산제품의 품질이 대 단히 낮고 생산량의 증대에도 限界가 노출 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목 재가공시설이 극도로 노후되어 조업을 중 단할 실정에까지 이르러 목재가공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FAO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보더라도 북한의 임산공업 시설 실태의 심각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 다.

2) 林産加工 施設別 實態 및 生産量

북한의 임산가공 시설별 실태나 생산량 에 대하여 북한이 발표한 자료는 거의 없 다. 그러나 다행히도 1980년대 전반기의 북한 임산공업에 관한 FAO자료가 있어 이 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製材所

북한의 제재소는 규모에 따라 중규모 공 장과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공 장으로 구분되어지며, 대규모의 全自動化 된 제재소는 없다. 중규모 공장은 위안 등 에 11개가 있고, 소규모공장은 약 60개가 있으며, 이외에도 건재산업부 산하에 숫자 미상의 소규모 제재소들이 있다.

북한에서 전형적인 중규모 제재소의 하 나라고 볼 수 있는 위안제재공장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재 공장은 25년 전

에 시설된 것으로 기본적인 설비는 150mm band saw, 3대의 gang saw, conveyor運 搬體系이며, 모든 설비는 수리를 要하는老 朽된 상태라고 한다. 이 제재공장에서는 연 간 70,000m³의 제재목(소요되는 원목은 100,000m³)을 생산함과 아울러 연간 300 m³의 합판도 생산하고 있다.

1983년경 북한의 年間 제재목 생산량은 총 140만m³ 정도로 11개의 중규모공장에서 약 65만m³, 60개의 소규모 공장에서 약 75 만m³을 생산하였다.

나) 合板工場

북한에서 원래의 합판공장은 1957년 구 소련의 원조로 세워진 길주합판공장뿐이며, 현재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이 다. 그 외의 합판제조시설은 기존의 중규 모 제재공장에 소규모로 併設한 것으로써 규모는 극히 작다.

길주합판공장의 경우 모든 설비가 老朽 되어 있어 연간 약 16,000m³의 低品質 합 판이 생산된다. 그 중 250m³은 25mm두께이 고 1,200m³은 10~14mm 두께이며, 나머지 14,500m³은 4~6mm로써 薄板위주로 생산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합판용재로 포플라류, 자작나 무류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극소량의 베 니어를 수입하고 있다.

길주합판공장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소규 모 합판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총합판생산 량은 年間 약 19,300m³이다.

다) 木削板 및 木纖維板 工場

북한이 목재의 종합적 이용을 촉구하면 서 근간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문이 목 삭판 및 목섬유판의 생산량 확대이다. 목삭

판 및 목섬유판 설비는 기존 제재공장에 병설되어 제재과정에서 나오는 폐잔재를 원자재로 이용하고 있다.

해산에 있는 제재소 병설 목삭판 공장에서 年間 약 8,000m³의 단층 저질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조시설이 몇 개 더 있다고 한다. 북한의 年間 목삭판 및 목섬유판 총생산량은 약 44,000m³으로 이중 목삭판이 36,000m³, 목섬유판이 8,000m³이다.

라) 펄프 및 製紙工場

북한에는 1979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하나의 대규모 펄프 및 제지공장 이외에는 郡單位의 소규모 공장에서 고지, 벗짚, 그리고 일부 원목을 원자재로 하여 低質의 가정용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으로 종이류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나 設備投資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산량의 대폭 증대가 불가능한 실

정이다. 북한은 고급지의 경우는 일본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다. 그간 북한이 발표한 紙類 및 펄프 생산계획 또는 실적은 표 3)과 같다.

〈표 3〉 북한의 지류 및 펄프 생산량

(단위: 천톤)

年 度	紙 類	펄 프
1944	10	
1949	17	22
1955	20.8	
1956	26	25
1957	31.5	
1959	45	62
1960	47	
1961	59	
1962	65	
1963	71	
1969	141	
1976	250	
1984	450(목표)	

〈다음호에 계속〉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 보전임지내의 임야 또는 준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개인)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동유림
-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종중임야
-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 준보전임지를 '89. 12. 31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하는 임야
-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